

춘천지방법원 2022. 11. 8 선고 2022가단1018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1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양구군 C 전 40㎡와 강원 양구군 D 답 126㎡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1993. 7. 26. 접수 제3266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 김도현

별지